|  |  |  |
| --- | --- | --- |
| **재정부, 국가 세무총국《영업세 대신 증치세 부과 개혁 시범방안》 발부와 관련한 통지**  財稅[2011] 제110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 단독배정 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신쟝 생산건설병단 재무국:  《영업세 대신 증치세 부과 개혁 시범방안》을 국무원의 동의를 받고 발부하니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재정부  국가 세무총국  2011년 11월 16일  별첨: 영업세 대신 증치세 부과 개혁 시범방안  **영업세 대신 증치세 부과 개혁**  **시범방안**  중국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의 요구에 근거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제12차 5개년계획》에서 정한 조세제도 개혁목표와 2011년《정부활동보고》의 요구에 따라 이 방안을 제정한다.  1. 지도사상과 기본원칙  (1) 지도사상  과학적 발전에 유조한 조세제도를 수립함으로써 경제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현대 서비스업의 발전을 지원한다.  (2) 기본원칙  a. 통일계획 하에 단계별로 실시한다. 개혁과 발전, 안정 삼자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경제와 사회 발전요구를 고루 감안하며 개혁의 전면보급을 위한 수요와 당면실정을 결부시키고 과학적으로 계획하여 온당하게 추진한다.  b. 조세제도를 규범화 하고 부담을 합리화 한다. 증치세 과세에 차질이 없도록 보장하는 전제하에서 재정부담능력과 각 업계의 발전특점에 근거하여 조세요소를 합리하게 설정하고 개혁 시범과정에 업계의 과세부담이 늘어나지 않거나 다소 줄게 하며 중복과세 현장을 기본상 제거한다.  c. 전면을 조율하고 안전하게 이행한다. 시범 전과 시범 후 증치세와 영업세의 정책상의 접속, 시범 납세자와 비 시범 납세자의 조세조율을 잘하고 제삼차산업의 증치세 관리시스템을 수립하여 건전히 함으로써 개혁시범에 차실이 없도록 보장한다.  2. 개혁시범의 주요내용  (1) 개혁시범의 범위와 일시  a. 시범지역. 서비스업의 발전상황, 재정부담능력, 조세 징수관리 기본여건 등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먼저 경제 복사효과가 뚜렷하고 개혁 시범역할이 보다 강한 범위를 선택하여 시범활동을 전개한다.  b. 시범업계. 시범지역에서는 우선 교통운수업, 일부 현대 서비스업 등 생산성 서비스업을 선택하여 시범하고 차츰 기타업계에 보급한다. 여건이 구비되면 그때에 일부업계를 선택하여 전국범위에서 전 업계시범을 진행할 수 있다.  c. 시범일시. 2012년 1월 1일부터 시작하고 상황을 보아 즉시 방안을 개선하여 시범범위를 확대한다.  (2) 개혁시범의 주요세제 배치  a. 과세율. 현행 증치세 기준세율 17%와 낮은 세율 13%를 토대로 하여 11%와 6% 낮은 세율을 새로 증가하여 유형동산의 임대차 등에는 17%를 적용하고 교통운수업과 건설업 등에는 11%를 적용하며 기타 일부 현대 서비스업에는 6%를 적용한다.  b. 과세 계산방식. 교통운수업, 건설업, 체신 전신 통신업, 현대 서비스업, 문화체육사업, 부동산 매출이나 무형자산 양도에는 원칙상 일반 증치세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금융보험과 생활 서비스업에는 원칙상 증치세 간이계산방법을 적용한다.  c. 과세 계산의거. 납세자의 계산의거는 원칙상 발생한 의무과세 소득액 전액으로 계산한다. 대리 수취 지불이전이나 대납 자금이 대량 발생하는 업계는 그 대리수취, 대납 자금을 적당히 공제할 수 있다.  d. 서비스무역 수출입. 서비스무역 수입의 국내단계에서 증치세를 부과하고 수출에는 제로세율이나 면세제도를 실시한다.  (3) 개혁시범기간의 과도정책  a. 조세소득의 귀속. 시범기간에는 현행 재정체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원래 시법지역에 귀속되던 영업세소득을 증치세로 개혁하여 취득한 후에도 계속 시범지역에 귀속시키되 분리하여 입고한다. 시범으로 발생한 재정소득 절감은 현행 재정정책에 따라 주앙과 지방에서 나누어 부담한다.  b. 조세우대정책 이행. 국가에서 시범지역에 부여한 조세우대정책은 계속 실시할 수 있으나 개혁을 통하여 중복과세문제가 해결된 경우에는 취소한다. 시범기간에는 구체상황을 보아 적당한 이행정책을 실시한다.  c. 다 지역 간의 조세종목 조율. 조세개혁 시범납세자는 기구 소재지를 증치세 납세지로 하고 여타지역에서 납부한 영업세는 증치세 계산 시에 공제할 수 있다. 시범지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비 시범 납세자는 계속 현행 영업세규정에 따라 영업세를 신고해야 한다.  d. 증치세 공제정책 접속. 현행 증치세 납세자가 시범 납세자로부터 서비스를 구입하고 취득한 증치세 전용계산서는 현행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3. 시행  (1) 재정부와 국가 세무총국에서는 이 방안에 근거하여 구체 실시방법, 관련정책, 예산관리 입고규정을 제정하고 홍보, 해설 작업을 잘해야 하며 국무원의 동의를 받고 시범 지역과 업계를 선정해야 한다.  (2) 영업세 대신 과세하는 증치세는 국가 세무총국에서 징수하고 관리한다. 국가 세무총국에서는 개혁시범 시의 과세관리방법을 제정하고 증치세 관리 정보시스템과 조세 징수관리 시스템을 확충하는 동시에 화물운수업 증치세 전용계산서를 설계하여 통일적으로 인쇄하는 등 조세 징수관리와 관련한 준비작업을 전면적으로 잘 해야 한다. |  | **关于印发《营业税改征增值税**  **试点方案》的**  **通知**  财税[2011]110号    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  　　《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方案》已经国务院同意，现印发你们，请遵照执行。  　　　　　　　　　　　　　　　　　　　　　　　　　　　　　财政部  国家税务总局　　　　　　　　　　　　　　　　　　　　　　　　　　　　 二○一一年十一月十六日    　　附件：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方案    **营业税改征增值税**  **试点方案**    　　根据党的十七届五中全会精神，按照《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二个五年规划纲要》确定的税制改革目标和2011年《政府工作报告》的要求，制定本方案。  　　一、指导思想和基本原则  　　（一）指导思想。  　　建立健全有利于科学发展的税收制度，促进经济结构调整，支持现代服务业发展。  　　（二）基本原则。  　　1.统筹设计、分步实施。正确处理改革、发展、稳定的关系，统筹兼顾经济社会发展要求，结合全面推行改革需要和当前实际，科学设计，稳步推进。  　　2.规范税制、合理负担。在保证增值税规范运行的前提下，根据财政承受能力和不同行业发展特点，合理设置税制要素，改革试点行业总体税负不增加或略有下降，基本消除重复征税。  　　3.全面协调、平稳过渡。妥善处理试点前后增值税与营业税政策的衔接、试点纳税人与非试点纳税人税制的协调，建立健全适应第三产业发展的增值税管理体系，确保改革试点有序运行。  　　二、改革试点的主要内容  　　（一）改革试点的范围与时间。  　　1.试点地区。综合考虑服务业发展状况、财政承受能力、征管基础条件等因素，先期选择经济辐射效应明显、改革示范作用较强的地区开展试点。  　　2.试点行业。试点地区先在交通运输业、部分现代服务业等生产性服务业开展试点，逐步推广至其他行业。条件成熟时，可选择部分行业在全国范围内进行全行业试点。  　　3.试点时间。2012年1月1日开始试点，并根据情况及时完善方案，择机扩大试点范围。  　　（二）改革试点的主要税制安排。  　　1.税率。在现行增值税17%标准税率和13%低税率基础上，新增11%和6%两档低税率。租赁有形动产等适用17%税率，交通运输业、建筑业等适用11%税率，其他部分现代服务业适用6%税率。  　　2.计税方式。交通运输业、建筑业、邮电通信业、现代服务业、文化体育业、销售不动产和转让无形资产，原则上适用增值税一般计税方法。金融保险业和生活性服务业，原则上适用增值税简易计税方法。  　　3.计税依据。纳税人计税依据原则上为发生应税交易取得的全部收入。对一些存在大量代收转付或代垫资金的行业，其代收代垫金额可予以合理扣除。  　　4.服务贸易进出口。服务贸易进口在国内环节征收增值税，出口实行零税率或免税制度。  　　（三）改革试点期间过渡性政策安排。  　　1.税收收入归属。试点期间保持现行财政体制基本稳定，原归属试点地区的营业税收入，改征增值税后收入仍归属试点地区，税款分别入库。因试点产生的财政减收，按现行财政体制由中央和地方分别负担。  　　2.税收优惠政策过渡。国家给予试点行业的原营业税优惠政策可以延续，但对于通过改革能够解决重复征税问题的，予以取消。试点期间针对具体情况采取适当的过渡政策。  　　3.跨地区税种协调。试点纳税人以机构所在地作为增值税纳税地点，其在异地缴纳的营业税，允许在计算缴纳增值税时抵减。非试点纳税人在试点地区从事经营活动的，继续按照现行营业税有关规定申报缴纳营业税。  　　4.增值税抵扣政策的衔接。现有增值税纳税人向试点纳税人购买服务取得的增值税专用发票，可按现行规定抵扣进项税额。  　　三、组织实施  　　（一）财政部和国家税务总局根据本方案制定具体实施办法、相关政策和预算管理及缴库规定，做好政策宣传和解释工作。经国务院同意，选择确定试点地区和行业。  　　（二）营业税改征的增值税，由国家税务局负责征管。国家税务总局负责制定改革试点的征管办法，扩展增值税管理信息系统和税收征管信息系统，设计并统一印制货物运输业增值税专用发票，全面做好相关征管准备和实施工作。 |